|  |
| --- |
|  |
| **공정거래 규정** |
|  |

**우성파워텍㈜**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성파워텍(주)(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여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적용되며, 국내외 모든 사업 활동에 준수되어야 한다.

## 제3조 (공정거래의 기본 원칙)

1. 회사는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며, 담합, 가격 조작, 시장 분할 등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2. 협력사와의 거래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거래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 제4조 (부당한 거래행위의 금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제한 또는 거래 조건 변경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
2. 임직원은 부당한 거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1. 회사는 협력사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협력사와의 계약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체결되며, 계약 조건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3. 회사는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 제6조 (교육 및 내부 통제)

1.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 의식을 강화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감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예방한다.
3. 위반 사항 발견 시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한다.

## 제7조 (신고 및 보호)

1. 임직원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회사의 내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3. 신고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되며, 필요 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한다.